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2025. 04. 17.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 321-334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7.) 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17.(목)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4.(수) ~ 2025.05.19.(월)	2025.05.20.(화) ~ 2025.05.2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고강역신원아침도시.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2-321-33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7.(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봄)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4.(수) ~ 2025.05.19.(월)	2025.05.20.(화) ~ 2025.05.22.(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 청원프라자 3층)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대상증서

- 「인지세법」제1조 및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및 추가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구분		공급주체	과세문서종류	기재금액	비고
	아파트 공급계약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공급금액	분양계약자 보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옵션		신원종합개발(주)	도급에 관한 증서	총 옵션 대금(발코니 확장비 포함)	
납부기한	• 공급계약 체결일(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방문 구매 : 우체국 및 은행 (현금납부만 가능)					
납부방법 / 납부금액	• 공급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옵션 계약 체결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세액	없음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기타유상옵션 등 포함)이 6억원 미만일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부동산거래신고만 적용)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1)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4)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전매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5)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기납부한 금액이 총 분양가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6)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주택국 원도심재생과 - 4837 (2025.04.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1층, 4개동 총 237세대 중 일반분양 47세대

[특별공급 23세대(기관추천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12	01	046.3469	46	46.3469	13.8318	60.1787	27.1336	87.3123	24.1483	20	1	-	6	-	2	9	11	2
	02	048.5258	48	48.5258	14.5959	63.1217	28.4092	91.5309	25.2835	6	1	-	2	-	1	4	2	2
	03	058.8463	58	58.8463	17.5994	76.4457	34.4509	110.8966	30.6608	21	2	4	2	1	1	10	11	10
	합 계									47	4	4	10	1	4	23	24	14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정(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46	48	58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1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1
	장애인(경기도)	-	-	1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	-	2	2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2	2
신혼부부 특별공급		6	2	2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1	1	4
합계		9	4	10	2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5.08.16.	2025.10.16.	2025.12.16.	2026.02.16.	2026.04.16.	2026.06.16.	입주 지정일
46	20	1층	2	145,719,000	214,081,000	359,800,000	5,000,000	30,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107,940,000
		2층	2	147,339,000	216,461,000	363,800,000	5,000,000	31,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109,140,000
		3층	2	148,675,500	218,424,500	367,100,000	5,000,000	31,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110,130,000
		4층	2	150,579,000	221,221,000	371,800,000	5,000,000	32,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111,540,000
		5~7층	5	154,426,500	226,873,500	381,300,000	5,000,000	33,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114,390,000
		8~9층	3	155,601,000	228,599,000	384,200,000	5,000,000	33,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115,260,000
		10~11층	4	157,221,000	230,979,000	388,200,000	5,000,000	33,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48	6	1층	2	152,847,000	224,553,000	377,400,000	5,000,000	32,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113,220,000
		3층	2	155,925,000	229,075,000	385,000,000	5,000,000	33,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2	157,950,000	232,050,000	390,000,000	5,000,000	34,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58	21	1층	9	191,970,000	282,030,000	474,000,000	5,000,000	42,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2층	8	194,076,000	285,124,000	479,200,000	5,000,000	42,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43,760,000
		3층	4	195,817,500	287,682,500	483,500,000	5,000,000	43,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145,05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046.3469	048.5258	058.8463	비고
약식표기	46	48	58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의 변경, 대출기관의 미확보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 계약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 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table><tr><th>구분</th><th>관련법규</th><th>해당기관</th></tr><tr><td>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td></tr><tr><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tr><td>중소기업 근로자</td><td>「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tr><tr><td>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td><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td>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td></tr></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당첨자 선정방법	■ ②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0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1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비고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은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당첨자 선정방법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체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1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비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구분(약식표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6, 48, 58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4.2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건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 청원프라자 3층
일반공급	1순위	2025.04.29.(화) ,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4.30.(수) ,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5.09.(금) ~ 2025.05.18.(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5.0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제출대상자	제출일시	서류 제출 장소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예비입주자 포함)	2025.05.14.(수) ~ 2025.05.19.(월) 10:00 ~ 16:00	•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건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 청원프라자 3층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분리 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관련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기존 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및 배우자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자 중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 •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해외 체류기간 판단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시 단신부임 인정,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인정 불가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 제외, 공통서류 만 제출
다자녀 가구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 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서	-	• 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성년자인 세대원	•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애 최초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인 경우 -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를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출산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전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12개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상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급여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홈택스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 추정 ※ 상기 방식이 불가할 경우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총 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추정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 홈택스 ② 세무서 /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 홈택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홈택스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세무서 / 홈택스 ② 해당직장
		신규 프리랜서	
		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위촉 /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해당직장)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 홈텍스 ② 해당직장
'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① 건보주택 비치 ② 세무서 / 홈텍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텍스 ② 건강보험공단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 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 홈택스 / 해당직장 ② 세무서 / 홈택스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택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해당자격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①, ② 등기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가격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토지/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홈택스 / 시가표준액 : 위택스 / 이택스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서울 외 지역) 이택스(서울지역)
	추가 해당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증빙) ※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항목 필수,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미과세)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발급(전국구)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서 통 류	○		신분증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배우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 간 명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 외 근 무 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해외 체류기간 판단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시 단신부임 인정,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인정 불가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 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인 경우 -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를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5.20.(화) ~ 2025.05.22.(목), 3일간 10:00 ~ 16:00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 청원프라자 3층)
예비입주자 등·호수 추첨 및 계약 체결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등·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6 - 401 - 564106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004호 홍길동 → "1011004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인지세 납부확인서	본인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사업주체 75,000원 / 계약자 75,000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계약체결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매계약의 경우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 변경, 대출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의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 및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6년 08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앞 당겨진 실입주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태업, 원자재 파동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아 입주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완납,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후에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 이전등기,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실, 관리사무소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2.3m	지하 1층 2.3m, 지하2층 2.3m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 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진능력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항]

구분	등급
내진능력(MMI)	VII-0.204g

9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안내

■ 발코니 확장 계약

1) 발코니 확장 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6	7,200,000	720,000	6,480,000	-
48	6,800,000	680,000	6,120,000	-
58	6,900,000	690,000	6,210,000	-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일부 유무상 옵션 반영)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상 인테리어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건축가마(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신협	134 - 004 - 257111	신원종합개발(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확장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1010301홍길동 / 102동 1004호 홍길순: 1021004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6	1안	2	거실+안방	3,500,000	350,000	3,150,000	• 제조사 : 삼성전자(주)
	2안	3	거실+안방+침실1	4,700,000	470,000	4,230,000	
48	1안	2	거실+안방	3,500,000	350,000	3,150,000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견본주택 및 계약 시 확인필요)
	2안	3	거실+안방+침실1	4,700,000	470,000	4,230,000	
58	1안	2	거실+안방	3,600,000	360,000	3,240,000	
	2안	3	거실+안방+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3안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100,000	610,000	5,49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 또는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품명	주택형	세부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기쿡탑(인덕션)	전 주택형	NZ63B5056AK 3구 인덕션		920,000	92,000	828,000	삼성전자
전기오븐(36L)	전 주택형	NQ36A6555CK		490,000	49,000	441,000	삼성전자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냉장	RR40C7995AP	5,500,000	550,000	4,950,000	삼성전자
		냉동	RZ34C7965AP				
		김치	RQ34C7945AP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DW60T7065SS+도어판넬		950,000	95,000	855,000	삼성전자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품명	주택형 (약식표기)	세부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거실마감 패키지	46	아트월 유럽산 타일(600*1200), 현관/거실/복도 시트 벽판넬 + 현관은경	2,900,000	290,000	2,610,000	-
	48	아트월 유럽산 타일(600*1200), 현관/거실/복도 시트 벽판넬 + 현관은경	3,000,000	300,000	2,700,000	-
	58	아트월 유럽산 타일(600*1200), 현관/거실/복도 시트 벽판넬 + 현관은경	2,600,000	260,000	2,340,000	-
거실조명	46	거실조명 + 주방조명 + 간접조명	1,700,000	170,000	1,530,000	-
	48	거실조명 + 주방조명 + 간접조명	1,700,000	170,000	1,530,000	-
	58	거실조명 + 주방조명 + 간접조명	2,500,000	250,000	2,250,000	-
주방가구패키지	46	주방가구 + 상판 + 조명 + 수전 + ACC	4,300,000	430,000	3,870,000	-
	48	주방가구 + 상판 + 조명 + 수전 + ACC	3,800,000	380,000	3,420,000	-
	58	주방가구 + 상판 + 조명 + 수전 + ACC	4,200,000	420,000	3,780,000	-
현관 중문	46 / 48 / 58	AL 3연동	1,550,000	155,000	1,395,000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잔금)	신협	134 - 004 - 257111	신원종합개발(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시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3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당 사업은 2022년 04월 14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당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단지내 조합분양 및 일반분양이 혼합 배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는 **부천수주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 **101~104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입주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또는 침실3에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되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일부 공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샤워부스, 위생기구,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 및 설치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홈넷 월패드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홍보관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 1~2층 / 지상 1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1동 및 103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102동 지상1층에 관리실 및 방재실, 103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 지상1층에 경비실 및 경로당, 102동과 104동 사이에 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지상1층 북서측에 계획,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는 101동 북측 쓰레기분리수거장 옆 및 103동 1호라인 1층 필로티 일부에 계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나 설치거부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헬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을"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아트월 등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타일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패턴·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형태 및 각 동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표현되는 줄눈과 지붕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등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은 102동 3호, 4호, 5호, 6호 및 104동 3호, 4호, 5호, 6호 라인만 연계되어 있고, 지하1층 주차장은 전체 동의 모든 호라인이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상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행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지하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모든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으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카탈로그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CG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CG,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 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일반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건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변경이 예정된 사항의 경우 분양시 건본주택에 별도로 안내 및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건본주택을 확인하여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뚝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 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인접세대의 단열을 위한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다용도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액정TV(확장시 설치)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최상층을 제외한 천장에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필터교환 등 유지보수를 위해 천장마감이 없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전열교환기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 시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 급배기시설(환기구등), 천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제한,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경계 부분에 위치하지만 당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은 제척부지의 개발 계획 및 변경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입주시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는 101동과 103동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 / 공용부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옥탑장식물은 추후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외부 신원아침도시 브랜드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됩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지하1층 유효통과높이 : 2.3m, 지하2층 유효높이: 2.3m)
-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주차장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차통합플랫폼과 연동 및 무인주차시스템(차량번호인식, 무인정산기(지상층만 적용))이 적용되어 운영됨을 인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PD, AV, EPS, TPS, S.T, AD, PIT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휨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휨룸,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휨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입면 디자인에 따라 저층부 코어 등 일부마감은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옥상 신축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 및 지상에 계획된 DA(지하 환기구) 로 인하여 일부세대 시야 가림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층에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시야 가림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는 58타입이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 바라며, 청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벽, 거실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홈넷 월패드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되며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선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을 촬영 또는 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 / 전기 / 설비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7812025-101-0000100호	₩13,912,71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보증약관 주요 내용

1)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분양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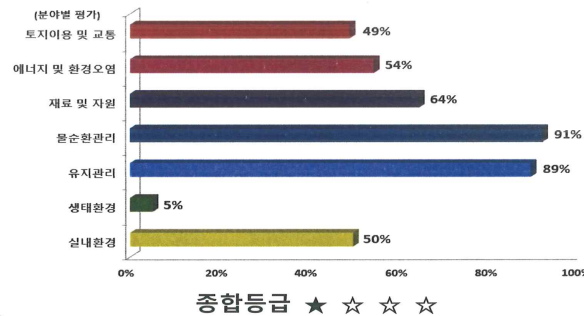
■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부천시 고강동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증번호 : G-SEED-P-2021-1210-1 인증기관 : 크레비즈인증원 유효기간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건축주 :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2년 11월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455번길 60, 66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307번지)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1층	
연 면 적 : 28,415.31㎡ (237세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주거(공동주택)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포인트	
	인증등급 : 일반등급(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 04. 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크레비즈인증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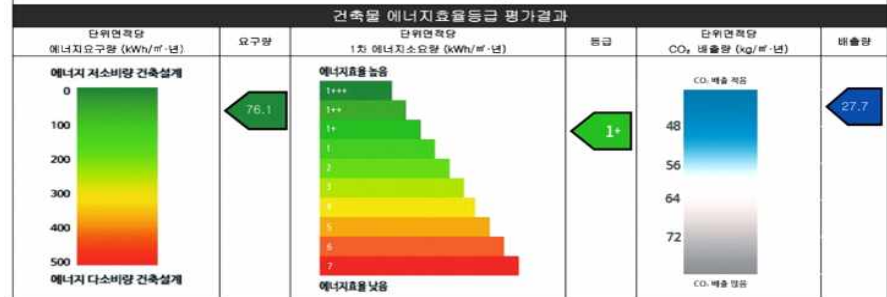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부천시 고강동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증번호 : 21-주-에-1+-0393
준공연도 : 20240531	평가자 : 홍충표
주 소 : 경기 부천시 고강동 307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11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8350.0713(㎡)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포인트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난방	33.2	68.8	14.3
급탕	30.7	35.0	7.1
조명	12.2	10.4	4.9
환기	3.0	8.2	1.4
합계	76.1	117.2	27.7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1년 11월 22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바탕건축사사무소	(주)건일엠이씨	(주)건일엠이씨
감리금액	953,106,000	107,250,000	82,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21171-0007885	경기도 부천시 성지로1122번길 17, 5층(고강동, 세현드림)
시공회사	신원종합개발(주)	110111-035071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제지하동 제상가층 제1호(화성공구유통밸리)

